# 송도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1-3300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민영 | 인천광역시 거주자 |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없음 | 6개월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 본 아파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 중인 송도국제도시 내 위치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에 따라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제외)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11.27.(금) | 2026.12.07.(월) | 2026.12.08.(화) | 2026.12.09.(수) | 2026.12.15.(화) | 2026.12.18.(금)~ 2026.12.27.(일)(10일간) | 2026.12.28.(월)~ 2026.12.30.(수)(3일간) |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11.2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가입 |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적용 |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특별공급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 일반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br>(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송도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 인증서 | 금융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KB국민 인증서 | 토스 인증서 | 신한 인증서 | 카카오 인증서 |
|---|---|---|---|---|---|---|---|
| APT | O | | | |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개정된 내용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27.(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며, 우선공급낙첨자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합니다.(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하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05호(2026.08.21.)]에 따라 2026.08.26.부터 2027.08.25.까지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거지역 토지면적(대지지분)이 6㎡ 초과 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경우 본 아파트의 전 주택형은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 정 | 2026.12.07.(월) | 2026.12.08.(화) | 2026.12.09.(수) | 2026.12.15.(화) | 2026.12.18.(금)~<br>2026.12.27.(일)(10일간) | 2026.12.28.(월)~<br>2026.12.30.(수)(3일간) |
| 방 법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br>▪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br>▪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 (PC·모바일) 청약홈 | ▪ 사업주체 견본주택<br>(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16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인천광역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6개월** | |

■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3.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인지세법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1조 2항 규정을 근거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균등하게 분담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 (☎ 044-204-3372~5)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공급금액 및 유상옵션 금액을 모두 합산한 실제 거래가격 총액을 기재금액으로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

|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납부세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계약자부담(50%)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7만5천원 | 17만5천원 |

- 납부방법

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③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④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 - 25066호(2026. 11. 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44 (송도국제도시 11공구 RC2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8~29층 7개동 총 592세대 중 일반분양 592세대

[특별공급 398세대(기관추천 61세대, 경제자유구역 61세대, 다자녀가구 61세대, 신혼부부 91세대, 노부모부양 19세대, 생애최초 44세대, 신생아 6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대수 : 927대(공동주택 : 924대(지하), 근린생활시설 : 3대(지상))

■ **입주시기** : **2030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 약식 표기 (타입)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타입별 세대수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 기관 추천 | 경제 자유구역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신생아 | 계 | | |
| 2026000574 | 01 | 084.8890A | 84A | 84.8890 | 25.3525 | 110.2415 | 56.9047 | 167.1462 | 70.9439 | 106 | 160 | 16 | 16 | 16 | 24 | 5 | 12 | 16 | 105 | 55 | 9 |
| | | | 84A-1 | | | | | | | 54 | | | | | | | | | | | |
| | 02 | 084.8150B | 84B | 84.8150 | 26.6847 | 111.4997 | 56.8551 | 168.3548 | 70.8821 | 48 | 48 | 5 | 5 | 5 | 8 | 2 | 4 | 5 | 34 | 14 | 3 |
| | 03 | 084.8052C | 84C | 84.8052 | 26.2994 | 111.1046 | 56.8485 | 167.9531 | 70.8739 | 96 | 96 | 10 | 10 | 10 | 15 | 3 | 7 | 10 | 65 | 31 | 4 |
| | 04 | 084.8959D | 84D | 84.8959 | 25.2139 | 110.1098 | 56.9095 | 167.0193 | 70.9497 | 96 | 192 | 20 | 20 | 20 | 29 | 6 | 14 | 20 | 129 | 63 | 8 |
| | | | 84D-1 | | | | | | | 96 | | | | | | | | | | | |
| | 05 | 084.8040E | 84E | 84.8040 | 26.4943 | 111.2983 | 56.8477 | 168.1460 | 70.8729 | 96 | 96 | 10 | 10 | 10 | 15 | 3 | 7 | 10 | 65 | 31 | 4 |
| **합 계** | | | | | | | | | | **592** | **592** | **61** | **61** | **61** | **91** | **19** | **44** | **61** | **398** | **194** | **28** |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이 변경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 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오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최하층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는 총 공급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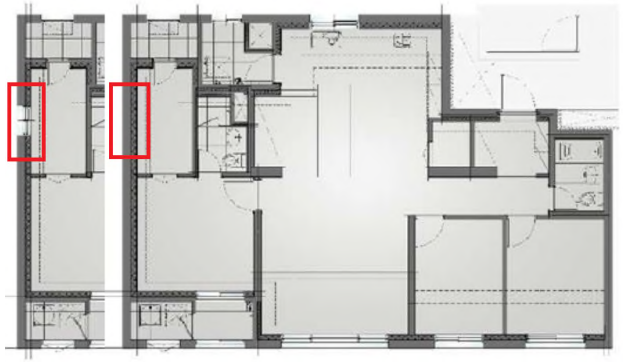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 084.8890A | | 084.8150B | 084.8052C | 084.8959D | | 084.8040E |
|---|---|---|---|---|---|---|---|
| 약식 표기(타입) | 84A | 84A-1 | 84B | 84C | 84D | 84D-1 | 84E |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신청 시('청약홈') 구분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4A, 84A-1 | 84D, 84D-1 |
|---|---|
|  |  |
| △ 84A-1 △84A | △ 84D-1 △84D |
| ※ 84A와 84A-1는 드레스룸의 창의 유무로 인한 구분이며 이외 모든사항이 동일합니다. | ※ 84D와 84D-1는 거실의 창의 위치로 인한 구분이며 이외 모든사항이 동일합니다. |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 구 분(약식표기) | | | 84A, 84A-1 | 84B | 84C | 84D, 84D-1 | 84E | 합 계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 3 | 1 | 2 | 4 | 2 | **12**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2 | 1 | 1 | 3 | 1 | **8**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2 | - | 1 | 2 | 1 | **6** |
| | 중소기업 근로자 | | 3 | 1 | 2 | 4 | 2 | **12** |
| | 장애인 | 인천광역시 | 2 | 1 | 2 | 3 | 2 | **10** |
| | | 서울특별시 | 2 | 1 | 1 | 2 | 1 | **7** |
| | | 경기도 | 2 | - | 1 | 2 | 1 | **6** |
| **소계** | | | **16** | **5** | **10** | **20** | **10** | **61** |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 | | 16 | 5 | 10 | 20 | 10 | **61**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인천광역시(50%) | | 8 | 3 | 5 | 10 | 5 | **31** |
| | 서울특별시, 경기도(50%) | | 8 | 2 | 5 | 10 | 5 | **30**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24 | 8 | 15 | 29 | 15 | **91**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5 | 2 | 3 | 6 | 3 | **19**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12 | 4 | 7 | 14 | 7 | **44** |
| 신생아 특별공급 | | | 16 | 5 | 10 | 20 | 10 | **61** |
| **합 계** | | | **105** | **34** | **65** | **129** | **65** | **398**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표 (단위: 세대, 원)

| 약식 표기 | | 동별 (라인별) | 공급 세대 수 | 층 구분 | 해당 세대 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5%) | | 중도금(60%) | | | | | | 잔금(35%) |
|---|---|---|---|---|---|---|---|---|---|---|---|---|---|---|---|---|---|---|
| | | | | | | | | |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계약 시 | 1개월 이내 | 2027.06.21. | 2027.12.20. | 2028.05.22. | 2028.10.20. | 2029.03.20. | 2029.08.20. | 입주지정일 |
| 84A | 84A | 103동 3호<br>104동 2,4호<br>105동 1,3,4호 | 106 | 1층 | 5 | 358,312,000 | 489,688,000 | - | 848,000,000 | 20,000,000 | 22,400,000 | 84,800,000 | 84,800,000 | 84,800,000 | 84,800,000 | 84,800,000 | 84,800,000 | 296,800,000 |
| | | | | 2층 | 5 | 358,312,000 | 498,688,000 | - | 857,000,000 | 20,000,000 | 22,850,000 | 85,700,000 | 85,700,000 | 85,700,000 | 85,700,000 | 85,700,000 | 85,700,000 | 299,950,000 |
| | | | | 3층 | 5 | 358,312,000 | 506,688,000 | - | 865,000,000 | 20,000,000 | 23,250,000 | 86,500,000 | 86,500,000 | 86,500,000 | 86,500,000 | 86,500,000 | 86,500,000 | 302,750,000 |
| | | | | 3층<br>(필로티) | 1 | 358,312,000 | 510,688,000 | - | 869,000,000 | 20,000,000 | 23,45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304,150,000 |
| | | | | 4층 | 6 | 358,312,000 | 514,688,000 | - | 873,000,000 | 20,000,000 | 23,650,000 | 87,300,000 | 87,300,000 | 87,300,000 | 87,300,000 | 87,300,000 | 87,300,000 | 305,550,000 |
| | | | | 5층 | 6 | 358,312,000 | 522,688,000 | - | 881,000,000 | 20,000,000 | 24,05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308,350,000 |
| | | | | 6층<br>~18층 | 78 | 358,312,000 | 529,688,000 | - | 888,000,000 | 20,000,000 | 24,4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310,800,000 |
| | 84<br>A-1 | 103동 1,4호<br>104동 1호 | 54 | 1층 | 3 | 358,312,000 | 489,688,000 | - | 848,000,000 | 20,000,000 | 22,400,000 | 84,800,000 | 84,800,000 | 84,800,000 | 84,800,000 | 84,800,000 | 84,800,000 | 296,800,000 |
| | | | | 2층 | 3 | 358,312,000 | 498,688,000 | - | 857,000,000 | 20,000,000 | 22,850,000 | 85,700,000 | 85,700,000 | 85,700,000 | 85,700,000 | 85,700,000 | 85,700,000 | 299,950,000 |
| | | | | 3층 | 3 | 358,312,000 | 506,688,000 | - | 865,000,000 | 20,000,000 | 23,250,000 | 86,500,000 | 86,500,000 | 86,500,000 | 86,500,000 | 86,500,000 | 86,500,000 | 302,750,000 |
| | | | | 4층 | 3 | 358,312,000 | 514,688,000 | - | 873,000,000 | 20,000,000 | 23,650,000 | 87,300,000 | 87,300,000 | 87,300,000 | 87,300,000 | 87,300,000 | 87,300,000 | 305,550,000 |
| | | | | 5층 | 3 | 358,312,000 | 522,688,000 | - | 881,000,000 | 20,000,000 | 24,05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308,350,000 |
| | | | | 6층<br>~18층 | 39 | 358,312,000 | 529,688,000 | - | 888,000,000 | 20,000,000 | 24,4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310,800,000 |
| 84B | | 103동 2호<br>105동 2호<br>104동 3호 | 48 | 3층<br>(필로티) | 3 | 358,000,000 | 512,000,000 | - | 870,000,000 | 20,000,000 | 23,500,000 | 87,000,000 | 87,000,000 | 87,000,000 | 87,000,000 | 87,000,000 | 87,000,000 | 304,500,000 |
| | | | | 4층 | 3 | 358,000,000 | 515,000,000 | - | 873,000,000 | 20,000,000 | 23,650,000 | 87,300,000 | 87,300,000 | 87,300,000 | 87,300,000 | 87,300,000 | 87,300,000 | 305,550,000 |
| | | | | 5층 | 3 | 358,000,000 | 523,000,000 | - | 881,000,000 | 20,000,000 | 24,05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308,350,000 |
| | | | | 6층<br>~18층 | 39 | 358,000,000 | 530,000,000 | - | 888,000,000 | 20,000,000 | 24,4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310,800,000 |

| 약식 표기 | | 동별 (라인별) | 공급 세대 수 | 층 구분 | 해당 세대 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5%) | | 중도금(60%) | | | | | | 잔금(35%) |
|---|---|---|---|---|---|---|---|---|---|---|---|---|---|---|---|---|---|---|
| | | | | | | | | |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계약 시 | 1개월 이내 | 2027.06.21. | 2027.12.20. | 2028.05.22. | 2028.10.20. | 2029.03.20. | 2029.08.20. | 입주지정일 |
| 84C | | 101동 3호<br>102동 3호<br>106동 3호<br>107동 3호 | 96 | 2층<br>(필로티) | 4 | 357,958,000 | 492,042,000 | - | 850,000,000 | 20,000,000 | 22,5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297,500,000 |
| | | | | 3층 | 4 | 357,958,000 | 495,042,000 | - | 853,000,000 | 20,000,000 | 22,65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298,550,000 |
| | | | | 4층 | 4 | 357,958,000 | 503,042,000 | - | 861,000,000 | 20,000,000 | 23,050,000 | 86,100,000 | 86,100,000 | 86,100,000 | 86,100,000 | 86,100,000 | 86,100,000 | 301,350,000 |
| | | | | 5층 | 4 | 357,958,000 | 511,042,000 | - | 869,000,000 | 20,000,000 | 23,45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304,150,000 |
| | | | | 6층<br>~15층 | 40 | 357,958,000 | 519,042,000 | - | 877,000,000 | 20,000,000 | 23,850,000 | 87,700,000 | 87,700,000 | 87,700,000 | 87,700,000 | 87,700,000 | 87,700,000 | 306,950,000 |
| | | | | 16층<br>~29층 | 40 | 357,958,000 | 524,042,000 | - | 882,000,000 | 20,000,000 | 24,100,000 | 88,200,000 | 88,200,000 | 88,200,000 | 88,200,000 | 88,200,000 | 88,200,000 | 308,700,000 |
| 84D | 84D | 101동 4호<br>102동 4호<br>106동 4호<br>107동 4호 | 96 | 2층<br>(필로티) | 4 | 358,341,000 | 497,659,000 | - | 856,000,000 | 20,000,000 | 22,800,000 | 85,600,000 | 85,600,000 | 85,600,000 | 85,600,000 | 85,600,000 | 85,600,000 | 299,600,000 |
| | | | | 3층 | 4 | 358,341,000 | 500,659,000 | - | 859,000,000 | 20,000,000 | 22,95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300,650,000 |
| | | | | 4층 | 4 | 358,341,000 | 508,659,000 | - | 867,000,000 | 20,000,000 | 23,350,000 | 86,700,000 | 86,700,000 | 86,700,000 | 86,700,000 | 86,700,000 | 86,700,000 | 303,450,000 |
| | | | | 5층 | 4 | 358,341,000 | 516,659,000 | - | 875,000,000 | 20,000,000 | 23,75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306,250,000 |
| | | | | 6층<br>~15층 | 40 | 358,341,000 | 524,659,000 | - | 883,000,000 | 20,000,000 | 24,150,000 | 88,300,000 | 88,300,000 | 88,300,000 | 88,300,000 | 88,300,000 | 88,300,000 | 309,050,000 |
| | | | | 16층<br>~29층 | 40 | 358,341,000 | 529,659,000 | - | 888,000,000 | 20,000,000 | 24,4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310,800,000 |
| | 84<br>D-1 | 101동 2호<br>102동 2호<br>106동 2호<br>107동 2호 | 96 | 2층<br>(필로티) | 4 | 358,341,000 | 491,659,000 | - | 850,000,000 | 20,000,000 | 22,5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297,500,000 |
| | | | | 3층 | 4 | 358,341,000 | 494,659,000 | - | 853,000,000 | 20,000,000 | 22,65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298,550,000 |
| | | | | 4층 | 4 | 358,341,000 | 502,659,000 | - | 861,000,000 | 20,000,000 | 23,050,000 | 86,100,000 | 86,100,000 | 86,100,000 | 86,100,000 | 86,100,000 | 86,100,000 | 301,350,000 |
| | | | | 5층 | 4 | 358,341,000 | 510,659,000 | - | 869,000,000 | 20,000,000 | 23,45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304,150,000 |
| | | | | 6층<br>~15층 | 40 | 358,341,000 | 518,659,000 | - | 877,000,000 | 20,000,000 | 23,850,000 | 87,700,000 | 87,700,000 | 87,700,000 | 87,700,000 | 87,700,000 | 87,700,000 | 306,950,000 |
| | | | | 16층<br>~29층 | 40 | 358,341,000 | 523,659,000 | - | 882,000,000 | 20,000,000 | 24,100,000 | 88,200,000 | 88,200,000 | 88,200,000 | 88,200,000 | 88,200,000 | 88,200,000 | 308,700,000 |

| 약식 표기 | 동별 (라인별) | 공급 세대 수 | 층 구분 | 해당 세대 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5%) | | 중도금(60%) | | | | | | 잔금(35%) |
|---|---|---|---|---|---|---|---|---|---|---|---|---|---|---|---|---|---|
| | | | | | | | |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계약 시 | 1개월 이내 | 2027.06.21. | 2027.12.20. | 2028.05.22. | 2028.10.20. | 2029.03.20. | 2029.08.20. | 입주지정일 |
| 84E | 101동 1호<br>102동 1호<br>106동 1호<br>107동 1호 | 96 | 2층<br>(필로티) | 4 | 357,941,000 | 487,059,000 | - | 845,000,000 | 20,000,000 | 22,25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295,750,000 |
| | | | 3층 | 4 | 357,941,000 | 489,059,000 | - | 847,000,000 | 20,000,000 | 22,350,000 | 84,700,000 | 84,700,000 | 84,700,000 | 84,700,000 | 84,700,000 | 84,700,000 | 296,450,000 |
| | | | 4층 | 4 | 357,941,000 | 502,059,000 | - | 860,000,000 | 20,000,000 | 23,000,000 | 86,000,000 | 86,000,000 | 86,000,000 | 86,000,000 | 86,000,000 | 86,000,000 | 301,000,000 |
| | | | 5층 | 4 | 357,941,000 | 513,059,000 | - | 871,000,000 | 20,000,000 | 23,550,000 | 87,100,000 | 87,100,000 | 87,100,000 | 87,100,000 | 87,100,000 | 87,100,000 | 304,850,000 |
| | | | 6층<br>~15층 | 40 | 357,941,000 | 524,059,000 | - | 882,000,000 | 20,000,000 | 24,100,000 | 88,200,000 | 88,200,000 | 88,200,000 | 88,200,000 | 88,200,000 | 88,200,000 | 308,700,000 |
| | | | 16층<br>~29층 | 40 | 357,941,000 | 530,059,000 | - | 888,000,000 | 20,000,000 | 24,4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310,800,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호별, 층별 등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금액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특별공급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br>생애최초<br>**신생아**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적용횟수 제한 없음 |
| |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br>신혼부부<br>노부모부양<br>**신생아**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br>→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br>-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br>-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 | | |
|---|---|---|---|
| | |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br>-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br>-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br>-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br>→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br>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br>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br>※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br>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br>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td></tr>
<tr><td>무주택<br>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br>
- 기관추천 / 경제자유구역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br>
- 노부모부양 : 무주택세대주 요건
</td></tr>
<tr><td>청약통장<br>자격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br>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경제자유구역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br>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br>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br>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br>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br>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br>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td></tr>
</table>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1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br>■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추천기관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br>■ 장애인 :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br>■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인천보훈지청 복지과<br>■ 중소기업 근로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br>■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br>■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4-2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1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으로서 특별공급 해당 기관장이 선정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5호 및「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br>1)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br>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br>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br>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종사자<br>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

| | |
|---|---|
|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br>1.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연구소만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br>2. "종사자 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 기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br>3. "약국"이라 함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 전용 약국을 말한다.<br>4. "의료기관"이라 함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말한다.<br>5. "교육기관"이라 함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를 말한다 |
| **당첨자 선정방법** | 1.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먼저 사업주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합니다.<br>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확정자 및 예비자가 선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주체에 대상자를 통보합니다.<br>3.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사업 주체에 통보된 자만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당첨확정자 또는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약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br>4.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 4-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1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r>-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br>■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br>-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br>■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br>■ **①지역** :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거주자 50%**<br>**※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잔여물량 50%에서 경기도·서울특별시 거주자와 재경쟁하며, 이경우 지역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습니다.**<br>■ **②배점** |

| 배점항목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4명 이상 | 4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3명 | 35 | |
| | | **2명** | **25**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3명 이상 | 1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2명 | 10 | |
| | |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 |

| | | | | |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r>-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경기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br>*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인천·서울·경기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br>***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4-4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91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r>■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br>■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br>■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br>■ **①소득구분**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1단계 | 우선공급 (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2단계 | 일반공급 (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3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 순위 | 내용 |
|---|---|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 ③지역 :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거주자 50%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6.11.27.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11,064,819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13,277,783원 |
| 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533,764원~ 10,547,268원 | 8,802,203원~ 12,323,083원 | 9,326,986원~ 13,057,779원 | 9,906,264원~ 13,868,768원 | 10,485,542원~ 14,679,757원 | 11,064,820원~ 15,490,747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9,040,517원~ 12,054,021원 | 10,562,643원~ 14,083,523원 | 11,192,383원~ 14,923,176원 | 11,887,517원~ 15,850,021원 | 12,582,650원~ 16,776,866원 | 13,277,784원~ 17,703,710원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0,547,269원~ | 12,323,084원~ | 13,057,780원~ | 13,868,769원~ | 14,679,758원~ | 15,490,748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br>(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br>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br>단, 아래 경우는 제외<br>*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br>*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br>*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br>*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br>-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4-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9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br>-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br>■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한 분**<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br>-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당첨자<br>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br>■ **①지역** :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거주자 50%**<br>■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0명 | 5 | 4명 | 25 |
| | | 1명 | 10 | 5명 | 30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3명 | 20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4-6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44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r>■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br>-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br>**※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br>-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br>■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br>-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br>-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주택은 금회 60㎡ 이하 주택형 공급이 없으므로 1인 가구 '단독세대' 신청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1단계 | 우선공급 (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2단계 | 일반공급 (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3단계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거주자 50%**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6.11.27.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우선공급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14,384,265원 |
| 일반공급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14,384,266원~ 17,703,710원 |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15,850,021원 | ~16,776,866원 | ~17,703,710원 |

| | | | | | | | | |
|---|---|---|---|---|---|---|---|---|
| | | 16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br>(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br>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br>단, 아래 경우는 제외<br>*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br>*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br>*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br>*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br>-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4-7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1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br>-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br>■「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 당첨자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선정방법**

■ **①소득구분**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1단계 |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2단계 |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3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거주자 50%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6.11.27.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우선공급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14,384,265원** |
| 일반공급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14,384,266원~ 17,703,710원** |
| 추첨공급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br>(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br>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br>단, 아래 경우는 제외<br>*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br>*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br>*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br>*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br>-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br>■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td></tr>
<tr><td>청약통장<br>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br>- 1순위<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br>-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b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br>※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td></tr>
</table>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거주자 50%**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구분 | | 가점제 | 추첨제 |
|---|---|---|---|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84A / 84B / 84C / 84D / 84E** | 40% | 60% |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 0명 | 5 | 4명 | 25 |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 |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 구 분 | 내 용 |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br>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br>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br>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br>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br>(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로서 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을 의미함<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br>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 한정)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로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br>- 외국인 직계존속<br>-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br>※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br>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table>
<tr><td></td><td></td><td>-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로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br>-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br>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br>-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br>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br>-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br>-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td></tr>
<tr><td></td><td>③입주자저축<br>가입기간</td><td>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br>*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r><td></td><td>주택소유여부 및<br>무주택기간<br>산정기준</td><td>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td></tr>
<tr><td></td><td colspan="2">■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
<tr><th>단계</th><th>비율</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
<tr><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
<tr><td>3단계</td><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
</table>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br>-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br>*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r><td>비고</td><td colspan="2">■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br>-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br>-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td></tr>
</table>

##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br>-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br>-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br>추가서류<br>(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br>-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able>
<tr><td>마이데이터<br>('청약도움e')<br>서비스</td><td colspan="2">-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br>-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td></tr>
<tr><td>공고단지<br>청약연습</td><td colspan="2">-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br>-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br>-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br>서비스</td><td>청약홈</td><td>-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br>- 조회기간 : 2026.12.15.(화) ~ 2026.12.24.(목) (10일간)<br>-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br>-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td></tr>
<tr><td>문자</td><td>- 제공일시 : 2026.12.15.(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br>-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br>*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r>-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서류 제출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대 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
| 제출기간 | 2026.12.18.(금) ~ 2026.12.27.(일), 10일간 / 10:00~17:00 |
| 제출방법 | 견본주택 방문접수 |
| 제출장소 |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16 |

■ 유의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동호추첨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특별공급 예비 및 일반공급 예비)

■ 표1.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대상 | 서류 발급기준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서류 | ○ | - | 서약서<br>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본인 | · 견본주택 내 비치 |
| | - | ○ | 인감증명서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제출<br>·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br>·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신청 불가)<b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청약신청(정보취약계층) 및 계약 불가<br>※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제출 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 정확히 기재<br>[발급용도: 당첨자격 확인 및 아파트 계약 / 제출처 : '송도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
| | - | ○ | 인감도장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시는 제출 생략<br>·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지참 필수<br>·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 |

| | | | | | |
|---|---|---|---|---|---|
| | ○ | - | 신분증 |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br>※ 모바일 신분증 불가 |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br>•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관추천 대상자는 제외)<br>※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br>※ 기관추천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
| | - |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br>(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br>※ 인터넷 청약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 |
| | - | ○ | 군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 명시]<br>•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 (25년 이상) 명시)] |
| | - |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br>-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 •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 | - | ○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대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br>※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br>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br>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 | - | 해외 체류 증빙서류 | 본인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br>•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br>•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br>※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br>※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br>※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br>※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 본인 |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 - | -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 본인 | • 해당 기관의 추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거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갈음)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br>-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br>-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 |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br>-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자녀 |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함.)<br>-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 | - | ○ | 입양관계 증명서<br>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br>(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br>•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br>•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
| | ○ | - | 소득증빙 서류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br>•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br>※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 - | ○ | 부동산 소유현황 및<br>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br>• (발급기관)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br>•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r>• 부동산 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제출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소득 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함.)<br>-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 | - | ○ | 입양관계 증명서<br>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해당자 | • 견본주택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 - | ○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해당자 | • 견본주택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br>(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

| | | | | | |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존속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하므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br>※ 기록 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br>직계비속 |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br>직계비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br>•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br>-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br>•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비속 |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br>*만30세미만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br>*만30세이상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br>(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 ○ | - | 국민건강보험<br>요양급여 내역 |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br>-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 - | ○ | 국민건강보험<br>요양급여 내역 |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br>-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 ○ | - | 건강보험자격<br>득실확인서 | 피부양<br>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명,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등 기재)<br>-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 - | ○ | 건강보험자격<br>득실확인서 | 피부양<br>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명,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등 기재)<br>-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신생아<br>특별공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br>(상세) | 배우자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br>※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 | - | | 직계비속 |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br>•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br>19세 이상<br>세대원 전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소득증빙 서류 | 본인 및 만<br>19세 이상<br>세대원 전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br>※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 - | ○ | 부동산 소유현황 및<br>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br>• (발급기관)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br>•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r>• 부동산 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제출 |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 |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 |
|---|---|---|---|---|---|
| | | | 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소득 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br>(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생애최초<br>특별공급**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br>•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br>19세 이상<br>세대원 전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발급처 : 해당 직장, 세무서) |
| | ○ | - | 소득증빙 서류 | 본인 및 만<br>19세 이상<br>세대원 전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br>※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 - | ○ | 부동산 소유현황 및<br>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br>(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br>• (발급기관)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br>•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r>• 부동산 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제출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 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 | 입양관계 증명서<br>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해당자 | • 견본주택 내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 - | ○ | 사실증명서<br>(신고사실없음) | 해당자 | • 견본주택 내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함.)<br>-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 표1. 일반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대상 | 서류 발급기준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공통서류** | ○ | - | 서약서<br>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본인 | • 견본주택 내 비치 |
| | - | ○ | 인감증명서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제출<br>•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br>•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신청 불가)<b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청약신청(정보취약계층) 및 계약 불가<br>※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제출 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 정확히 기재<br>[발급용도: 당첨자격 확인 및 아파트 계약 / 제출처 : '송도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

| | | | | | |
|---|---|---|---|---|---|
| | - | ○ | 인감도장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시는 제출 생략<br>•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지참 필수<br>•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 |
| | ○ | - | 신분증 |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br>※ 모바일 신분증 불가 |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br>•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관추천 대상자는 제외)<br>※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br>※ 기관추천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
| | - |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br>(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br>※ 인터넷 청약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 |
| | - | ○ | 군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 명시 |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 • 만 30세 미만 청약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br>-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대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br>※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br>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br>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 **추가서류<br>(가점제)**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br>•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br>*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br>(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 - | ○ | 당첨사실 확인서 |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br>*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br>*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 | - | ○ | 국민건강보험<br>요양급여 내역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br>-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 - | ○ | 건강보험자격 | |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명,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등 기재) |

| | | | | | |
|---|---|---|---|---|---|
| | | | 득실확인서 | |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비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br>*만30세 미만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br>*만30세 이상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 국민건강보험<br>요양급여 내역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br>-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 - | ○ | 건강보험자격<br>득실확인서 | |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명,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등 기재)<br>-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 | - | 해외 체류 증빙서류 | 본인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br>•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br>•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br>※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br>※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및<br>세대원 전원 |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br>※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 비자 발급내역<br>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br>※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 주택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br>•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공시가격증명원 등)<br>•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 주택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대리인 제출 시 추가 서류 (본인 외 모두 제3자)**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공급신청자<br>(본인) | • 용도: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위임용<br>※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 |
| | - | ○ | 위임장 | 공급신청자<br>(본인) |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내 비치) |
| | - | ○ | 대리인 신청인 신분증<br>및 도장(서명) | 대리인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br>•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 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표2.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br>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br>※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 해당직장<br>- 세무서 |

| | | | |
|---|---|---|---|
| |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br>※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br>※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제출 (※직인 날인) |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br>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br>※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br>※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해당직장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br>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br>※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br>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br>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br>[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 (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br>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br>- 세무서 |
| | **법인대표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br>②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br>③ 사업자등록증 사본<br>④ 법인등기부등본 원본<br>⑤ 재직증명서 | - 세무서<br>- 등기소<br>- 해당직장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br>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br>※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세무서<br>-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br>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br>※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필수)<br>※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해당직장<br>- 세무서 |
| **무직자** |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br>②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접수장소<br>- 세무서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은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상기 서류 외 당첨자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 - 해당직장<br>- 세무서<br>-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br>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br>※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br>※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 제출<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 |

| | | |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br>(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br>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br>②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br>※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br>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br>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직인날인) | - 해당직장<br>- 세무서 |

**■ 표4.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 해당자격 | 자산입증 제출서류 | | 발급처 |
|---|---|---|---|
|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r>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br>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br>③주민센터 |
| |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br>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인 경우)<br>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br>(서울시: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br>(서울시 외: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①,② 주민센터<br>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br>위택스(www.wetax.go.kr) |
| |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br>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br>③ 토지이음(www.eum.go.kr) |
|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r>전국통합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br>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br>(www.iros.go.kr)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일정 및 계약장소**

|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신혼부부,<br>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 • 일자: 2026.12.15.(화)<br>• 확인방법<br>-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br>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br>*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br>- 2026.12.28.(월)~2026.12.30.(수) (10:00~17:00)<br>• 장소<br>- 당사 견본주택<br>(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16 ) |
| 일반공급 | 1순위 | | |
| | 2순위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구분 | 계약기간 | 장소 |
|---|---|---|
| 당첨자 계약체결 | 2026.12.28.(월) ~ 2026.12.30.(수) / 10:00~17:00 |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16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 구분 | 서류유형 |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본인 계약 시 | - | ○ | 자격검증서류 | -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br>- "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 | ○ | - | 인감증명서 | 본인 | • 용도 : 아파트계약용(※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br>•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 | ○ | - | 인감도장 | 본인 |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br>•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 | ○ | - | 계약금 입금증 | - | • 견본주택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 | ○ | - | 인지세 (전자수입인지) | - |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 내 방문하여 구입)<br>•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 사항 (본인 외 모두 제3자) | - | ○ | 인감증명서 | 본인 |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br>•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
| | - | ○ | 인감도장 | 본인 |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 | - | ○ | 위임장 | -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 | ○ |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br>- "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수입인지(인지세) 미지참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아파트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 국민은행 | 393301-04-121235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101동 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101홍길동" 기재**)후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상기 해당 회차별 납부일에 따라 순서대로 납부하여야 하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주택처분 기준일**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br>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br>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br>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br>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br>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br>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br>*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br>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br>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br>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br>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br>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br>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br>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br>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br>-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br>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br>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br>**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br>**가.「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br>**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br>**1)「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br>**2)「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br>**3)「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10 유의사항 등

■ **공통사항**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일부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 및 분양홈페이지에 표기된 주택형별 형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용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본 아파트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무상으로 시공되며, 비확장형으로 선택이 불가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추가선택 유상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람)
- 추가선택 유상옵션 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의 중도금, 잔금(미납이 있을 경우 연체료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임)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가 대납했던 중도금대출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시공업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등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이 취소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일 경우 이에 대하여 정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 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1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자가 있으면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안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안의 토지(아파트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사업주체에게 주장할 수 없음.
-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사업주체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 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수도권 : 1년
  2. 수도원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단,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가 당첨된 경우에만 정당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 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당첨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중복청약 및 이중당첨자 처리기준**

-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 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함
-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신청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이후 당첨된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계약자 대출안내**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이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특히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관은 사업주체가 선정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견본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치 않을 경우 사업주체의 이자 대납(이하 "이자후불제" 등)에 대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총 분양대금의 5%)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및 사업주체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액 축소 및 대출불가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 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및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허가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 2에 따라 사업주체는「주택법」제48조의2 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거한 사전방문(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에 별도 통보합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 「주택법」제48조의2의 제1항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시 입주예정자가 아닌 제3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30년 0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2021.02.02.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거주 여부 관계없이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 |
|---|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GX, 키즈카페,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2개소, 유아놀이터, 주민휴게실 2개소 |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7조·제38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준공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주택규모 변경 및 전환 신청요건
    ① 청약예금 주택규모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한 경우 신청 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민원관련 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송도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으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동표기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송도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사항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근린생활시설과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 분할 및 구획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면적이 상이할 경우, 증가면적은 사업주체가 부담토록하고, 감소될 경우 그 잔액은 입주자에게 반환합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또한 지적법상 허용오차 범위에서의 면적증감으로 공유대지지분의 면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도 면적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달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달로그 등 홍보물에 사용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컷, 단위세대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설계변경, 각종 평가심의 결과 등으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달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달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청약 당첨자 및 계약고객만 방문 가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시공사 브랜드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 시공사 브랜드 변경, 고유마을명칭 등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태양광판넬, 조경시설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및 주차장 환기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하며 설치 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107동 인근 지상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추후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직·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옥상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실외기실(장비)로 인하여 저층 일부세대는 미관, 조망, 소음등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수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와 인접한 동은 소음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 측벽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필로티, 주동현관, 캐노피, 지하출입구, 유리난간 디테일, 문주, 천장, D/A, 조경패턴 등 외부 시설물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업무단지 및 그 외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 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급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97) 검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4호)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되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동·호수 당첨 시 동일한 평형 및 평면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대 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진동,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 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견본주택 내방(청약 당첨자 및 계약고객만 방문 가능)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공공공지, 보행자 전용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보행자 전용도로 상시개방 및 민원제기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학교관련 유의사항**

• 초등학생: (가칭)아라1초(2030.03. 개교 예정)에 배치 예정이나, 아라1초 개교 전까지 (가칭)아라5초 임시 배치 예정입니다.
• 중·고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학교군 내 배치 예정입니다.
• 초등학생 통학구역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통학구역 지정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중·고등학교 학교군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개발계획 변경(취소, 세대수 변경, 입주시기 조정), 인근 개발 사업 추이, 우리교육청 학생배치 기준(학급별 학생수 상·하향 조정 등)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592세대로「주택법」제35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본 아파트 단지 복리시설 내에는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해당 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해당 협약 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연수구간 협약을 통해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해당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관련 법규 및 규정, 관할 행정기관 및 관할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70% 까지 우선적으로 입소 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배정이후 잔여 인원은 입주민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592세대로 본 아파트 단지 복리시설 내에는「주택법」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55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에서 해당 센터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로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해당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체결할 예정이고,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해당 협약 상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해당 단지의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지역 돌봄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센터의 설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거나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연수구간 협약을 통해 단지 복리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해당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관련 법규 및 규정, 관할 행정기관의 지침에 따라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게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의 30~7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단지 입주민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소 후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는 향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센터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및 사용료,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11 추가 선택 품목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본 공동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발코니 확장이 무상 제공되어 비확장형으로 선택이 불가하며, 그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을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고, 계약 가능 일자는 공동주택 계약자분께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1)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호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은 일괄확장 전제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 내 목장호류, 가구류, 유리, 타일,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부창호는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

별 내에서도 차등 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비확장 발코니는 난방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별도의 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무상옵션 품목

| 약식표기 | 품목 |
|---|---|
| 전타입 | 일반냉장고장 |
| | 빌트인냉장고장 |
| 전타입 | 주방가구 하부장 일반수납장 |
| | 주방가구 하부장 로봇청소기장 |

■ 플러스 옵션 품목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약식표기 | 선택안 | 설치위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실내기 |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84A, 84A-1 84B, 84C, 84D, 84D-1, 84E | 시스템에어컨 2대 | 거실+침실1(안방) | 3,410,000 | 341,000 | 3,069,000 | 거실 : AJ072BN1PBC1<br>침실1 : AJ023BN1PBC1 |
| | 시스템에어컨 4대 |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 5,940,000 | 594,000 | 5,346,000 | 거실 : AJ072BN1PBC1<br>침실1 : AJ023BN1PBC1<br>침실2 : AJ020BN1PBC1<br>침실3 : AJ020BN1PBC1 |

2) 주방가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약식표기 | 품목 | 제품명 | 제조사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84A, 84A-1 84B, 84C, 84D, 84D-1, 84E | 인덕션 | CC99F63G1DS | 삼성전자 | 2,200,000 | 220,000 | 1,980,000 | - |
| | 식기세척기 | DW80F75K1UAP | 삼성전자 | 2,090,000 | 209,000 | 1,881,000 | - |
| | 독립형 주방후드 | RGI110-04TB | 경동나비엔 | 550,000 | 55,000 | 495,000 | - |
| | 시스템제습기 | CDD-600B | 코스텔 | 847,000 | 84,700 | 762,300 | - |
| | 전기오븐 | NQ36A6555CK | 삼성전자 | 396,000 | 39,600 | 356,400 | - |

3) 주방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약식표기 | 제품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84A, 84A-1 | 벽, 상판 세라믹타일+아메리칸스탠다드 씽크수전 | 3,410,000 | 341,000 | 3,069,000 | - |
| | 벽, 상판 세라믹타일+아메리칸스탠다드 씽크수전<br>+조명형 유리도어 장식장 | 5,500,000 | 550,000 | 4,950,000 | - |
| 84B | 벽, 상판 세라믹타일+아메리칸스탠다드 씽크수전 | 3,850,000 | 385,000 | 3,465,000 | - |
| 84C | 벽, 상판 세라믹타일+아메리칸스탠다드 씽크수전 | 3,520,000 | 352,000 | 3,168,000 | - |
| 84D, 84D-1 | 벽, 상판 세라믹타일+아메리칸스탠다드 씽크수전 | 3,740,000 | 374,000 | 3,366,000 | - |
| 84E | 벽, 상판 세라믹타일+아메리칸스탠다드 씽크수전+광폭아일랜드(900) | 2,475,000 | 247,500 | 2,227,500 | - |

4) 현관 중문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약식표기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84A, 84A-1 84B, 84C,<br>84D, 84D-1, 84E | 현관 중문(3연동) | 990,000 | 99,000 | 891,000 | - |

5) 팬트리,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약식표기 | 위치 |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84A | 팬트리 | 주방 | 가구도어 + 폴대형시스템가구 | 220,000 | 22,000 | 198,000 | - |
| | 드레스룸 | 안방 | 3연동 도어 + 폴대형 시스템가구 | 1,265,000 | 126,500 | 1,138,500 | - |
| | 드레스룸 | 안방 | 3연동 도어 + 조명판넬형 시스템가구 | 2,970,000 | 297,000 | 2,673,000 | - |
| 84A-1 | 팬트리 | 주방 | 가구도어 + 폴대형 시스템가구 | 220,000 | 22,000 | 198,000 | - |
| | 드레스룸 | 안방 | 3연동 도어 + 폴대형 시스템가구 | 1,210,000 | 121,000 | 1,089,000 | |
| | 드레스룸 | 안방 | 3연동 도어 + 조명판넬형 시스템가구 | 2,750,000 | 275,000 | 2,475,000 | - |
| 84B | 팬트리 | 복도 | 가구도어 + 폴대형 시스템가구 | 330,000 | 33,000 | 297,000 | - |
| | 팬트리 | 주방 | 가구도어 + 폴대형 시스템가구 | 330,000 | 33,000 | 297,000 | - |
| | 드레스룸 | 안방 | 3연동 도어 + 폴대형 시스템가구 | 1,265,000 | 126,500 | 1,138,500 | - |
| | 드레스룸 | 안방 | 3연동 도어 + 조명판넬형 시스템가구 | 2,750,000 | 275,000 | 2,475,000 | - |
| 84C | 팬트리 | 주방 | 가구도어 + 폴대형 시스템가구 | 330,000 | 33,000 | 297,000 | - |
| | 드레스룸 | 안방 | 3연동 도어 + 폴대형 시스템가구 | 1,210,000 | 121,000 | 1,089,000 | - |
| | 드레스룸 | 안방 | 3연동 도어 + 조명판넬형 시스템가구 | 2,530,000 | 253,000 | 2,277,000 | - |
| 84D, 84D-1 | 팬트리 | 복도 | 가구도어 + 폴대형 시스템가구 | 220,000 | 22,000 | 198,000 | - |
| | 드레스룸 | 안방 | 슬라이딩도어 + 폴대형 시스템가구 | 660,000 | 66,000 | 594,000 | - |
| | 드레스룸 | 안방 | 슬라이딩도어+조명판넬형 시스템가구 | 2,420,000 | 242,000 | 2,178,000 | - |

| | | | | | | | |
|---|---|---|---|---|---|---|---|
| 84E | 팬트리 | 주방옆 | 가구도어 + 폴대형 시스템가구 | 154,000 | 15,400 | 138,600 | - |
| | 팬트리 | 침실1옆 | 가구도어 + 폴대형 시스템가구 | 550,000 | 55,000 | 495,000 | - |
| | 드레스룸 | 안방 | 슬라이딩도어 + 폴대형 시스템가구 | 682,000 | 68,200 | 613,800 | - |
| | 드레스룸 | 안방 | 슬라이딩도어+조명판넬형 시스템가구 | 2,420,000 | 242,000 | 2,178,000 | - |

6) 태양열차단필름 및 방진방충망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약식표기 | 위치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84A | 창호유리 | 태양열차단필름 | 2,250,000 | 225,000 | 2,025,000 | - |
| 84A-1 | 창호유리 | 태양열차단필름 | 2,360,000 | 236,000 | 2,124,000 | - |
| 84B | 창호유리 | 태양열차단필름 | 2,470,000 | 247,000 | 2,223,000 | - |
| 84C | 창호유리 | 태양열차단필름 | 2,060,000 | 206,000 | 1,854,000 | - |
| 84D | 창호유리 | 태양열차단필름 | 2,500,000 | 250,000 | 2,250,000 | - |
| 84D-1 | 창호유리 | 태양열차단필름 | 2,860,000 | 286,000 | 2,574,000 | - |
| 84E | 창호유리 | 태양열차단필름 | 2,790,000 | 279,000 | 2,511,000 | - |
| 84A, 84A-1 84B, 84C, 84D, 84D-1, 84E | 발코니1, 거실 침실2, 침실3 ,주방 | 방진방충망 | 2,310,000 | 231,000 | 2,079,000 | - |

- 열차단필름은 타입별 전체 창호 시공 기준으로, 실내 측 유리1면에 시공됩니다. 단, 발코니가 있는 침실은 발코니창에만 시공되며, 침실과 발코니 사이의 창문(분합창)은 제외됩니다.
-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은 시공 제외됩니다.
- 유리창의 크기에 따라 가로방향 이어붙임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고효율 열차단필름 특성상 야간에 점등시 무지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조명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약식표기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84A, 84A-1 | 현관라인센서등+거실 라인직간접등+매입등+실링팬+<br>식탁 라인직간접등+주방라인등+식탁우물천장 | 3,465,000 | 346,500 | 3,118,500 | - |
| 84B | 현관라인센서등+거실 라인직간접등+매입등+실링팬+<br>식탁 라인직간접등+주방라인등+식탁우물천장 | 3,355,000 | 335,500 | 3,019,500 | - |
| 84C | 현관라인센서등+거실 라인직간접등+매입등+실링팬+<br>식탁 라인직간접등+주방라인등+식탁우물천장 | 3,300,000 | 330,000 | 2,970,000 | - |
| 84D, 84D-1 | 현관라인센서등+거실 라인직간접등+매입등+실링팬+<br>식탁 라인직간접등+주방라인등+우물천장 확장+거실우물천장 일부시트루버 | 4,070,000 | 407,000 | 3,663,000 | - |
| 84E | 현관라인센서등+거실 라인직간접등+매입등+실링팬+<br>식탁 라인직간접등+주방라인등+우물천장 확장 | 3,410,000 | 341,000 | 3,069,000 | - |

8) 세라믹타일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약식표기 | 위치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84A, 84A-1, 84B, 84C | 아트월 | 세라믹타일 | 1,705,000 | 170,500 | 1,534,500 | - |
| | 복도 | 세라믹타일 | 1,100,000 | 110,000 | 990,000 | - |
| | 거실쇼파벽 | 세라믹타일 | 2,200,000 | 220,000 | 1,980,000 | - |
| 84D, 84D-1 | 아트월 | 세라믹타일(침실3벽측) | 1,650,000 | 165,000 | 1,485,000 | - |
| | 복도 | 세라믹타일(침실3벽측) | 1,320,000 | 132,000 | 1,188,000 | 침실2 슬라이딩도어 선택 시 |
| | 복도 | 세라믹타일(침실2,3벽측) | 2,310,000 | 231,000 | 2,079,000 | 침실2 슬라이딩도어 미선택 시 |
| 84E | 아트월 | 세라믹타일 (침실2벽측) | 2,310,000 | 231,000 | 2,079,000 | - |
| | 거실벽 | 세라믹타일 (침실1벽측) | 4,070,000 | 407,000 | 3,663,000 | - |
| | 복도 | 세라믹타일 (침실2벽측) | 1,155,000 | 115,500 | 1,039,500 | 침실2 슬라이딩도어 미선택 시 |

9) 욕실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약식표기 | 위치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84A, 84A-1 84B, 84C, 84D, 84D-1, 84E | 공용욕실 | 아메리칸스탠다드 수전 (세면기, 욕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아메리칸스탠다드 세면기+복합환풍기+욕실벽 대형타일 (600*1200) | 2,640,000 | 264,000 | 2,376,000 | - |
| | 부부욕실 | 아메리칸스탠다드 수전 (세면기, 해바라기샤워) + 비데일체형 양변기 +아메리칸스탠다드 세면기+복합환풍기+욕실벽 대형타일 (600*1200) | 2,310,000 | 231,000 | 2,079,000 | - |

10) 타일형강마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약식표기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84A, 84A-1 | 타일형강마루 | 1,540,000 | 154,000 | 1,386,000 | - |
| 84B | 타일형강마루 | 1,595,000 | 159,500 | 1,435,500 | - |
| 84C | 타일형강마루 | 1,540,000 | 154,000 | 1,386,000 | - |
| 84D, 84D-1 | 타일형강마루 | 1,485,000 | 148,500 | 1,336,500 | - |
| 84E | 타일형강마루 | 1,650,000 | 165,000 | 1,485,000 | - |

11) 붙박이장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약식표기 | 위치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84A, 84A-1 84B, 84C, 84D, 84D-1, 84E | 침실3 | 붙박이장 | 1,540,000 | 154,000 | 1,386,000 | - |

12) 슬라이딩도어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약식표기 | 위치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84D, 84D-1, 84E | 침실2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825,000 | 82,500 | 742,500 | - |

13) 플러스 옵션 품목 납부계좌

|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플러스 옵션 품목 납부계좌 | 국민은행 | 393301-04-121248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

- 상기 계좌는 플러스 옵션 품목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플러스 옵션 품목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101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12) 유의사항

- 플러스 옵션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품목은 아파트에 실제 시공되는 제품과 제조사 및 모델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에 별도로 설치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플러스 옵션 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 옵션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방문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시스템에어컨 선택하는 경우 거실의 스텐드형, 안방(침실1)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해당 콘센트는 설치하지 아니함)**
- 방진방충망은 미선택 시 기본 일반방충망이 설치되며, 옵션 선택 시 기본 일반방충망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방진방충망은 창호 형태 및 규격에 따라 일부 창호에만 **설치(미설치 창호 존재)**되고, 타입(평형)에 따라 설치 위치·수량·사양이 상이하므로 계약 전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방진방충망은 제조사 사정에 따라 제조사, 사양, 디자인, 색상, 개폐 방향, 설치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제품 특성상 외부로 미세하게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방진방충망은 미세먼지 저감 기능 구조상 일반방충망 대비 통기성, 시인성, 채광성이 낮아질 수 있고, 알루미늄 프레임 무게로 인해 개폐가 다소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방진방충망은 나노섬유 소재 특성상 강풍 시 배부름 현상과 망 이탈 우려가 있어 바람이 강한 날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곰팡이 방지를 위해 물청소(분무기 사용 등)를 금하고 정전기 먼지털이개로 털어낸 후 바닥 먼지만 물걸레로 닦아내시기 바랍니다.
- 방진방충망은 약 3년 주기의 유상 교체(사용 환경 및 관리 상태에 따라 상이)를 권장하며, 교체 문의는 해당 판매처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인덕션 옵션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주방 가전 옵션 미선택 시 주방가구는 수납장으로 시공되며,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세라믹 타일 옵션 금액은 확장 시 제공되는 벽타일, 인조대리석 상판 비용을 제외하여 산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라믹 타일 자재특성상 줄눈이 생기며, 위치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플러스 옵션 중 일부 항목은 미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공급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 플러스 옵션의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플러스 옵션의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플러스 옵션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플러스 옵션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플러스 옵션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 옵션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 옵션 세라믹타일 미선택시 주방벽은 타일이 시공되고 주방상판은 인조대리석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마감재의 두께차이로 인하여 창호·문선·주방 상부장 및 하부장 외의 사이즈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조명판넬형 옵션 선택시 시스템가구 선반고정을 위한 악세사리 구멍으로 콘크리트 또는 석고마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전등 및 감지기 등의 부착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옵션은 주택형별로 구성(우물천장 신설·확장, 시트루버 적용 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 및 분양 카달로그에서 구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특화 옵션 미선택 시 기본등이 설치되며, 우물천장의 설치여부, 크기, 조명기구의 형태, 수량, 위치 등이 상이하므로 계약 전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 하부장을 로봇청소기장 선택시 로봇청소기 공간 확보로 인해 수납장의 사용이 줄어들거나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로봇청소기장 선택 시 주방가구 하부장 일부에 거치공간이 제공되며, 로봇청소기의 크기 및 형태에 따라 수납이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로봇청소기장에는 급수 및 배수(드레인) 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자동 급·배수(직배수) 기능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 배관공사 가능 여부는 해당 제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 하부장을 일반장으로 선택시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냉장고장은 주택형별, 일반/빌트인냉장고장에 따라 수납장의 형태, 사이즈가 상이하므로 계약 전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A 타입은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동·호수에 따라 드레스룸 창호의 설치 여부가 상이하며, 103동 1/4라인, 104동 1호라인 세대는 드레스룸에 창호가 설치됩니다. 계약 전 해당 동·호수의 드레스룸 창호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A 타입 드레스룸 창호가 설치되는 세대는 창호에 따라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폴대형, 조명판넬형 포함)의 구성 및 수납량이 상이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 단지 여건 사항

**■ 단지외부여건**

- 송도국제업무단지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학교 등)은 국가기관, 인천도시공사,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로서 향후 택지지구 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 주택은 위 시행자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속한 구역에 건축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대지지분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시설 설치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각종 영향평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송도국제업무단지 건설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입주 후 주변단지 신축 및 사업진행과정에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공원계획 및 단지 주변 공공공지, 보행자 전용도로, 수변공원 계획은 인천도시공사의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하며, 견본주택 및 기타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는공동주택 RC1, RC3공동주택, 근생, 학교, 천변공원 등이 건설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 침해, 소음, 조명 발생 등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송도국제업무단지 기반시설(도로 및 공원 등) 조성계획에 따라 준공 시 아파트 진출입 동선 및 연결로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및 단지 간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진동, 먼지, 눈부심,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상 상위 계획 및 최종측량성과도에 따라 도로폭,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마감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의 교육시설 부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내의 교육시설 조성 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변경, 취소, 개교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보행자 안전휀스가 설치되며 조망권 및 보행에 있어 불편함이 있을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와 31m도로가 만나는 부분의 도로차선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보행자 연결을 위해 일부구간이 보도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에 공동주택, 학교, 근린공원 등이 건설될 예정으로 준공시 대지경계 형태가 모형 및 설계도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여건**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국계법, 건축법, 주택법 등 사업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카달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및 각종 홍보물의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이며, 축척 및 건물높이, 동간거리 등 실제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 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사업주체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설계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 조성 레벨에 따라 인접한 단지경계부분에 조경석, 산벽 또는 옹벽 등의 설치로 미관이 침해될 수 있으며, 높이, 설치구간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별도의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으며, 단지 내 오수관로는 외부 차집관로와 직접 연결하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 세대내의 난간이 유리난간으로 적용되어있어 사다리차가 거치하여 사용이 불가하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운반을 하여야 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커튼월룩, BIPV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동 외벽 등에 장식물(로고 등),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아파트 옥상 및 부대시설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부대시설 옥상에는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홍보용 CG에 표현된 주동 외벽 줄눈은 본 공사 시 선형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외벽마감은 수성페인트, 커튼월룩, BIPV, AL시트 마감이며 저층부 일부에 외벽마감은 화강석 마감 시공 예정이며 분양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의 특화 디자인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또는 마감수준 현저한 저하가 아닌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소방(소방차량 활동공간 및 통로, 공기안전매트 등)에 따라 단지 내 도로 및 조경계획과 차량차단기, 문주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역난방 적용으로 집단에너지 사용이 필요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전체 주동의 저층부 석재마감은 2개층 높이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있으며, 추후 주동 입면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저층부 석재마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인 어린이집, 경로당,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휘트니스, 골프연습실 등이 위치하여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벽디자인 및 색채와 단지 내 조경시설물, 바닥패턴과 단지외부 도로차선은 본 공사 시 색채자문과 교통성 검토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수증기 발생, 세대 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사업주체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동의 필로티 내외부와 저층부 주변에 제연휀룸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활동 및 점검 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동의 정면, 배면, 측면에 제연휀룸, D/A가 설치되며, 1층 및 저층세대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미관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위치, 개수 및 규모는 착공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의 진출, 진입 차선 계획(차로 수, 차선 선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의 주차 관제 시스템 및 경비실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용상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소방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지하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기계/전기실 D/A, 주차장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설치 위치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생활폐기물(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보관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에 표현된 조경석, 투시형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경미한 변경(위치, 높이, 공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색채 및 모양 등),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디테일, 문주, 천장, D/A, 조경패턴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계약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공기안전매트 설치 공간 등으로 인하여 소방부서공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서 등에 명기된 집기, 가구 등의 표기는 집기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명기된 것으로 사업승인도서상에 명기된 집기, 가구류 등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주동의 저층부 마감(자재종류, 크기, 색상, 시공높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도로와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근린생활시설 전면 및 각 점포별로 바닥의 높이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사로 또는 계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각동의 주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 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 또는 개발사업주체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법면 및 옹벽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과 레벨,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디자인,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옥상에 태양광설비가 101동, 102동 옥탑, 103동 2/3/4라인, 옥탑, 104동 2/3/4라인, 옥탑, 105동 1/3라인, 옥탑, 106동 및 107동 옥탑에 설치될 예정이며,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고,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1층 주차장 차로의 폭은 6.0~7.8m이고 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7M이며, 택배차량 지하층 출입을 고려하여 지하1층 유효 천장고는 2.7M로 계획되었습니다. 다만,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 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 천장고는 일부 구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은 주차장, 지하1층 일부구간은 주민공동시설(주민카페,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관리사무실, 실내골프연습실, 휘트니스), 지상1층에 경로당 및 어린이집, 근생이 계획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하1층 총 48대(급속 3대, 완속 45대) 및 무인택배보관함이 각 동 지하1층에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설치 개수 및 위치는 현장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구간에는 조경계획 및 토목옹벽 등의 계획은 인허가 청의 협의에 따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편의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지하주차장 포함)의 구조(구조시스템 및 기초형식 등) 및 흙막이공법은 시공여건 또는 굴착 후 지반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및 문주,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 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옥외안테나설치위치 (옥상층: 103동, 106동, 107동), 중계장치(옥상층: 103동, 106동, 107동, 지하1층: 102동 PIT, 104동 PIT), 접지단자 위치(이동 통신 중계장치에 최근접), 전원단자 위치와 용량(이동 통신 중계장치에 최근접(총용량 4KW이상, 교류 220V, 단자 3개이상))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디자인 및 싸인, 외관몰딩, 필로티입구, 동출 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이, 경비실, 문주, 부대 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 및 재료, 마감, 단지의 명칭, 동표시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손잡이 및 잠금장치 형태)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민공동시설이 지상 및 지하층에 설치되며,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동별로 2호 조합당 엘리베이터는 1개소가 설치되고, 4호조합은 2개소가 설치되며, 엘리베이터 설치개소 및 속도가 다를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천창)이 각 동 주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1층 세대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소음과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과 제연휀룸의 급배기용 그릴은 본 시공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인근 세대는 계약 카달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여건, 조경특화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공공공지 및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와 보행자 전용도로 및 공공녹지와 레벨차이가 있으며, 연결을 위한 경사로 및 계단, 연결로 계획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추가**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편의시설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각종 설비휀이 옥상 및 외부의 설치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실/발전기실/펌프실/저수조, MDF실/방재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관련 설계도서(지하주차장 평면도) 및 분양상담을 통하여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도, 하수도, 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수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구조물 외관에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모형이나 안내된 인쇄물과 일부 디자인이 변경되어 설치 될 수 있음을 확인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로비, 엘리베이터홀, 복도 등 공용공간은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계단실 자동개폐되는 창호는 5개층마다 1개소 설치예정이며, 동별 층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모형에 표현된 창호 개소, 위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설치 위치 및 형태 등은 도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각 동별 저층(1,2층) 및 최상층 세대는 단위세대 방범을 위하여 발코니와 거실에 동체감지기(또는 외부에 적외선 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층은 거실에만 설치됨)
-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제한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수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공간은 서비스 A/S 센터로 일정기간 사용되며, 입주자는 이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 설치되며, 다소 가깝게 인접한 세대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주변 동출입구에서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하여 냄새·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부위치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모형, 분양 카달로그, 지하주차장 평면도, 부대시설 배치도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의 보행자 도로 선형 및 레벨, 조경식재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출입구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근린생활시설 전용주차장은 107동 전면 외부에 계획되어 있어,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도로, 단지 출입구,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등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에 의한 소음, 눈부심,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경비실 및 차량출입 통제장치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및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쪽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과 지하층 주민공동시설 전면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별 형평성을 배분하여 동선계획 되었으나 엘리베이터홀이 직접 연결되거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전실 엘리베이터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내 각종 설비 계획에 따라 일부 구간은 층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지하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기계/전기실 D/A, 주차장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및 근생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음. 특히,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에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인근동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시공 중 위치, 형태,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관련 모형,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단지 내 외부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인접대지 및 주변단지 레벨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2동, 103동, 104동, 106동측으로 지하1층에 주민공동시설 (돌봄센터, 휘트니스, 주민카페, 골프연습장 등)이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배면에 경로당,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104동, 105동 사이에 어린이집이 설치되며, 소음,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1/4호 배면에 작은도서관 통로 지붕구조물로 인하여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102동, 106동, 107동은 저층부 전체가 필로티(2개층 높이)로 계획되어 2층부터 세대가 배치되며, 103동, 104동, 105동은 1층부터 세대가 배치되며 이에 따라 101동, 102동, 106동, 107동의 2층 세대는 103동, 104동, 105동의 3층 세대와 유사한 높이에 위치하는 등 동일한 층이라도 동에 따라 실제 세대의 높이(지면으로부터의 높이)와 조망, 일조, 사생활 보호 정도에 차이가 있으니, 계약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당, 주민편의시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물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재질,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편의시설, 어린이놀이터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계획에 의해 각 동별로 주동 진입방식이 상이하고, 각각 출입구의 디자인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면특화계획에 따라 AL시트, 커튼월룩, BIPV 설치로 인해 음영이 생길 수 있으며, 일조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모형, CG, 분양카달로그 등에 표현되지 않는 내용은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3 설계관련 중요사항

**■ 단위세대**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된 유니트와 좌우 대칭된 형태로 시공되므로 계약 카달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쿡탑, 식기세척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욕실/현관/실외기실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은 하자와 무관합니다.
- 엘리베이터와 직접 접한 세대는 카달로그, 모형,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프라이버시 침해, 운행에 의한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명 옵션 선택시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실에 바닥배수구 및 입상배관, 가스계량기(가스배관은 노출), 환기시스템(설비시설노출) 등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는 곳은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필요한 노출배관(천장,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조적벽체(침실, 욕실, PD 등)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 또는 건식벽체(경량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변형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 벽체이며 철거 시 바닥마감이 연결되어있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 전기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세대별,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에 수납이 불편할 수 있으며, 미관에 저해됩니다.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 욕실가구, 현관신발장 및 수납장, 파우더장, 침실 붙박이장 등의 뒷면 및 바닥, 천장 등 노출되지 않는 부위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건축 마감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욕실가구 및 욕조에 접하는 면은 타일 및 난방코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② 욕실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난방코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③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④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⑤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상부, 하부, 측면, 뒷면은 별도의 도배, 타일등 마감재나 면처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⑥ 주방가구 상부, 하부, 측면은 별도 마감의 난방코일,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⑦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으며 유상 옵션의 경우 타일, 판넬 등에도 걸레받이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부 벽체는 일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지며,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타일 및 석재, 바닥재 가구류, 목창호류, 걸레받이, 벽지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하자 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차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의합니다.
- 단위세대 내 타일, 알판, 인테리어 판넬 등 마감공사에 의해 견본주택보다 벽 두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각 마감재들은 견본주택과 두께,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 마감공사, 저층부 특화공사 및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등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타사 마감사례와 비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창호의 상하좌우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 문선, 몰딩, 알판, 판넬 등 각종 마감재의 고정을 위한 타정기 시공상 사유로 핀자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후면 발코니에 설치되는 도어는 터닝도어로 설치되며, 내부가 안보이는 형태로 시공되기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바닥, 욕실의 벽, 바닥 타일 나누기는 현장여건 및 효율성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의 설치되는 타일 (욕실, 거실, 주방, 발코니) 의 패턴은 연속성이 없이 시공되기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기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은 법규에 의거해 거실 또는 침실, 복도, 발코니 등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미관 및 사용상 등의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타공시 손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커튼박스 조명추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빨래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각종 설비배관(급수,환기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유리난간, 프레임 사이즈 및 색상,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손잡이 및 잠금장치 형태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형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저층부 석재마감구간 창호크기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샤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 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비확장 발코니는 난방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주방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면 발코니에 세탁기 설치시 하부 세대 내 소음, 냄새, 거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실외기실 그릴창, 발코니 샤시의 색상은 견본주택과 상이한 색상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물의 냉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욕실에 바닥난방이 일부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바닥 단차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타일이 설치되는 현관 바닥, 팬트리, 욕실, 주방, 거실, 발코니 등의 타일 나누기 및 매지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의 재질은 타일로서 별도의 줄눈이 없는 방식으로 시공되며, 기성품 자기질 타일이지만 문양 및 명도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합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고정창이 설치되며 환기를 위한 창은 계단실에 사업승인 도서에 준하여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대칭형세대가 있어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식당, 드레스룸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시공이음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합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현관팬트리, 주방가구,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변형 벽체(건식고정벽체)는 일반 철근콘크리트 벽체에 비해 소음 및 진동의 차단, 단열성능 등이 취약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및 지상1층 동출입구, 복도, 승강기홀 부분의 마감재가 특화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복도, 승강기 홀 폭이 기준층보다 좁아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및 분할은 구조검토결과 및 안전상의 문제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거실창, 안방발코니 외기창에 유리난간이 설치되며,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거실(3W-중간창), 거실, 다이닝, 안방발코니(2W-한쪽창)은 안전상 고정창으로 시공되어 창문을 여닫을 수 없습니다.으며, 해당 동호수에 따라 창의 크기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국기봉은 외부 난간에 설치하여야 하나, 유리난간 적용으로 인해 설치가 어려우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될 예정이며, 지자체 협의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및 창호 외부 색상과 유리 난간의 색상이 견본주택 전시와 본 시공시 다를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도서에 세대내 표현된 창호,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 위생도기, 수전 등의 위치, 크기 및 사양이 본 시공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실, 주방발코니 도어의 문선사이즈는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방발코니에 결로방지 단열재가 설치되며, 자재의 특성상 재료분리대인 줄눈이 설치되어 미관에 저해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84A, 84D-1, 84E형만 건립하였으며, 84B, 84C형은 84A형과 주요 마감재, 가구패턴, 각종 가전 및 기구류 등은 동일하게 시공되나, 주방 폭, 주방 가구길이, 주방창호, 주방팬트리, 드레스룸, 침실1 등이 상이하여 계약전 견본주택에 전시된 CG, 모형, 각종 도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렌지후드 상부장 내부의 자동식소화기 설치로 인해 가구 사용이 일부 제한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 외부에 장식물, 커튼월룩, BIPV가 부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대의 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세대 내부 욕실, 발코니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 방지를 위해 바닥 구배시공을 하며, 도서 및 견본주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A, 84B, 84D, 84E 타입은 드레스룸에서 실외기실로 출입하는 구조이며,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실외기실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설치됩니다. 방화문 자재의 특성상 단열 성능이 낮아 실내외 온도차에 의해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C 타입은 주방에 외기에 면한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84B, 84E 타입은 주방 창호가 소형으로 설치되어 창호를 통한 자연 환기 및 채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 CG 및 분양 카달로그를 통해 주방 창호의 유무, 위치 및 크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A 타입은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동·호수에 따라 드레스룸 창호의 설치 여부가 상이하며, 103동 1/4라인, 104동 1호라인 세대는 드레스룸에 창호가 설치됩니다. 계약 전 해당 동·호수의 드레스룸 창호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A 타입 드레스룸 창호가 설치되는 세대는 창호에 따라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폴대형, 조명판넬형 포함)의 구성 및 수납량이 상이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D 타입은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동·호수에 따라 거실 창호 설치 위치, 개수가 상이하며, 101동 4라인, 102동 4라인, 106동 4라인, 107동 4라인 세대의 거실창호는 남서측으로 1개소만 설치되며, 101동 2라인, 102동 2라인, 106동 2라인, 107동 2라인 세대의 거실창호는 총 2개소로 남동측에 1개소, 동측에 1개소가 설치되므로 계약 전 해당 동·호수의 창호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D(101동 2라인, 102동 2라인, 106동 2라인, 107동 2라인 세대), 84E 타입은 거실 창호 계획에 따라 TV 설치를 위한 통합수구가 거실 벽면의 일측에 치우쳐 계획되어 있어, 일반적인 거실 평면과 TV 및 소파 등 가구 배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D(101동 2라인, 102동 2라인, 106동 2라인, 107동 2라인 세대), 84E 타입은 거실 창호로 인해 TV 설치가 가능한 벽면의 폭이 제한되어, 계약자가 희망하는 크기의 벽걸이형 TV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탠드형 등 다른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E 타입은 개수대가 거실방향으로 설치되어 물 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수대 주변 바닥은 물기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변색, 들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상은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결과 경관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일부 세대 외벽에 커튼월룩 및 BIPV가 설치됩니다. 해당 세대(101동, 107동 1호 84E타입 8~21층의 북측 거실창호, 침실2,3창호, 4호 84D타입 2~21층의 다이닝 창호, 102동, 106동 1호 84E타입 12~29층의 북측 거실창호, 침실2,3창호, 3호 84C타입 12~29층 발코니1창호, 대피공간창호, 침실2,3창호, 4호 84D타입 2~29층 다이닝창호, 104동 3호 84B타입 3~18층의 침실1창호, 드레스룸창호, 105동 2호 84B타입 3~18층의 침실1창호)는 외부에서 창호가 드러나지 않도록 일반 세대와 달리 창호가 외벽면 쪽으로 설치되며, 이에 따라 실내측 창호 주변에 단차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창호 주변 마감 형태, 창대 깊이, 커튼·블라인드 설치 위치 등이 일반 세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창호 형태는 견본주택 84E타입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타입별로 적용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하니 해당 동·호수 및 적용 부위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84C, 84D, 84E 타입의 다용도실 및 발코니2는 결로 방지를 위하여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되므로, 해당 공간의 천장고가 다른 타입에 비해 낮게 시공됩니다. 계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 및 분양 카탈로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전기 설비**
• 아파트 난방은 지역난방 방식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작동 소음이 거실 또는 침실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거실에 설치되는 스마트 월패드는 성능개선으로 제품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의 배기는 직배기 설치로 인해 세대별 외벽에 주방 및 욕실용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일부 입면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의해 옥상에 배기용 무동력 배기구가 설치 또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 단위세대 환기 유니트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 설치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실외기용 차단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 주방 싱크장 하부 바닥은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바닥에는 일부구간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세면기 하부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됩니다.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공용홀**
• 엘리베이터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홀은 채광창의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엘리베이터 홀 형태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채광창의 위치, 창호 크기등 채광 조건이 상이함을 인지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고지사항**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공급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 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분양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문, 팜플렛 등 각종 제공되는 인쇄물 및 이미지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비상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기계환기장치, 천장환기구,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과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 [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 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 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인 바,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은 연출된 사항으로 실제로 시공 설치되지 않는 사항이며,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연출용 제시부분(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커튼, 집기, 이동식 가구 및 페이브릭, 가전, 악세서리 기타 전시소품류 등)의 미확인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 배관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된 에어컨냉매매립배관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된 욕실 및 발코니 바닥배수구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 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합니다.
-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도서의 주방가구, 위생도기, 욕실 수전류 등의 표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설치 위치 및 형태 등은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각종 도서에 표현된  마감재(주방가구, 일반가구, 위생도기, 수전, 가전류, 각종 창호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강마루는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무늬, 색상은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품이 혼용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형상에 표현된 포장계획, 주출입구 포장, 조경, 조경석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 된 것으로,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등 각종 제공되는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에 표현된 워터프론트, 공원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공/전시품목**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텐,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식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옵션사항 및 전시품목들은 견본주택 확인 및 포함여부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커뮤니티 시설**

- 주민공동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사업주체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계획승인서, 모형, CG 등에 명기된 집기 등의 표기는 집기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명기된 것으로 사업승인도서상에 명기된 집기류 등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공간은 서비스 A/S 센터로 일정기간 사용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로 인해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후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4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표시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의 적용)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 구 분 |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 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 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 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 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 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미적용 | • 지역난방 적용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 용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 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함 |
| | 고효율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 용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 용 | •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 용 | • 세대내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 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 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적 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해당없음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 용 |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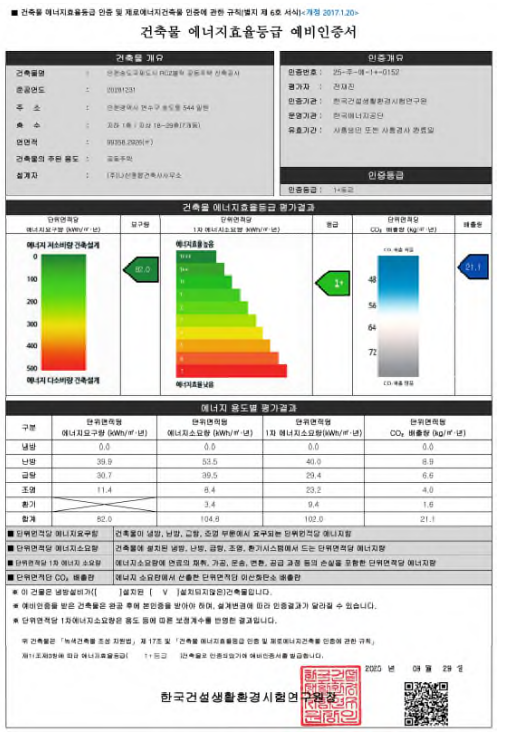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건축물의 중요도계수에 대응되는 내진등급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건축물의 내진등급 | 건축물의 중요도 | 중요도계수 |
|---|---|---|
| 내진1등급 | 중요도 1 | 1.2 |

※ 내진능력 :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고 설계대로 시공한 경우, 적용된 건축물의 중요도계수에 대응되는 내진등급을 건축물의 내진능력으로 본다.

- 내진능력의 표기 방법 중,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구분 | 내진능력(MMI 등급) |
|---|---|
|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 VII-0.220g |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의2**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지하 1층 | 지하 2층 | 2.7m 이상 |
| 2.7m | 해당없음 | |

※ 주차장 차로 외 주차 구획 및 설비공간은 높이 2.1m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이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 송도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07812026-101-0000500호** | **338,623,350,000원** |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자(수분양자)는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설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대금채권 및 임대수입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PF대출 만료 전 대출금의 전부를 상환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PF금융지사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대광에이엠씨, 한아건설(주)로 변경할 수 있고, 수분양자는 이에 이의 없이 동의한 것으로 한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포함)

|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감리 | 통신감리 |
|---|---|---|---|---|
| 회 사 명 |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 남양기술감리단 | ㈜여명기술단 | 유한회사 이에프 |
| 감리금액 | 2,077,989,100 | 708,175,518 | 901,808,000 | 263,230,000 |
| 전화번호 | 02-591-0071 | 063-841-4882 | 031-736-6063 | 070-8281-7911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 분 | 사업주체 | | 시공사 | |
|---|---|---|---|---|
| 상 호 | 주식회사 대광 에이엠씨 | 한아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 대광건영 | 모아건설산업(주) |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37, 10층(수내동)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 4층(치평동)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3(마륵동) |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2, 101호(상동) |
| 법인등록번호 | 135811-0222786 | 204411-0005748 | 200111-0160633 | 200111-0453608 |
| 전화번호 | 062-362-8430 | 062-606-1000 | 062-362-8430 | 062-606-1000 |

## 견본주택 위치도




주택전시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11,16번지

## 사업부지 위치도




현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44

## 분양문의 1551-3300

**▣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16**

**▣ 사업부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44 (송도국제도시 11공구 RC2BL)**

**▣ 홈페이지 : https://www.송도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com**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의사항은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상세 공사 범위와 마감재는 견본주택 방문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